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0. 10. 27.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작성 방법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당첨자 본인 성명	주민등록번호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 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
	주소(법인소재지)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재	(휴대)전화번호 당첨자 본인의 연락처 기재
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 [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) 등] 원	③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
		④ 증여 ·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, 펀드 · 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.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회수 등 이에 준하는 자금 기재 원
	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) [ ] 그 밖의 관계( ) ④번에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모든 자와의 관계 기재 (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 후 기재)	[ ] 보유 현금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[ ] 그 밖의 자산(종류: 현금이 아닌 자산종류 기재)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타 부동산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종전부동산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⑦ 소계 ②+③+④+⑤+⑥합계금액 원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금액 합계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합계 (주택담보대출+신용대출+그밖의 대출금) 원	주택담보대출: (분양계약시 공란) 원 신용대출: 상기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그 밖의 대출: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자금 →중도금 집단 대출액 기재 (금회 당첨된 동 · 호수 분양가의 50%)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대출)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 ] 미보유 [ ] 보유 (건)	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재 (분양권 및 입주권, 부부공동명의 지분소유 포함)
		⑨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또는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⑩ 회사지원금 · 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·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사용 시 기재 원
		⑪ 그 밖의 차입금 제 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여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원 [ ]부부[ ]직계존비속(관계:) [ ]그 밖의 관계( ) ⑪번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 기재	⑫ 소계 ⑧+⑨+⑩+⑪ 합계 금액 원
	⑬ 합계	※[총금액] 당첨된 동 · 호수의 분양대금과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함 ⑦+⑫ 원	
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당첨된 동 · 호수의 분양가 (⑬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) 원
	⑮ 계좌이체 금액	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당첨된 동 · 호수의 분양가 (⑬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) 원
	⑯ 보증금 · 대출 승계 금액	작성 생략 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 생략 원
	지급 사유	(작성 생략)

⑱ 입주 계획	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[ ] 본인입주 [ 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 ] 임대 (전 · 월세) ⑨번항목 기재시 필수 체크	[ 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 작성 생략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(날짜 공란) 년 월 일

제출인 당첨자 본인 서명 기재 (서명 또는 인)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0. 10. 27.>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SAMPLE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홍길동	주민등록번호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 881111-1111111	
	주소(법인소재지)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62	(휴대)전화번호 010-1111-1111	
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100,000,000 원		③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 50,000,000 원
		④ 증여 · 상속 원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23,500,000 원
	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) [ ] 그 밖의 관계( )		[✔] 보유 현금 [ ] 그 밖의 자산(종류:)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	⑦ 소계 173,500,000 원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	원
			신용대출	원
			그 밖의 대출	203,500,000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대출)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✔] 미보유 [ ] 보유 (건)		
		⑨ 임대보증금 원		⑩ 회사지원금 · 사채 원
		⑪ 그 밖의 차입금 30,000,000 원		⑫ 소계
	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) [✔] 그 밖의 관계(형)		233,500,000 원
	⑬ 합계	407,000,000 원		
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407,000,000 원
	⑮ 계좌이체 금액	407,000,000 원
	⑯ 보증금 · 대출 승계 금액	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원
	지급 사유 ( )	

⑱ 입주 계획	[✔] 본인입주 [ 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3 년 12 월)	[ ] 임대 (전 · 월세)	[ 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